용역대금 청구소송 소장 작성 예시

유형: 가상 작성 예시 / 제출용 공식 서식 아님

가상 사건의 전제

원고 김가람은 피고 이다온과 2026년 2월 1일 결과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대금은 10,000,000원, 잔금 지급기일은 완성된 결과물을 검수·승인한 뒤인 2026년 5월 15일로 정했다는 가정입니다. 원고는 2026년 4월 30일 완성된 결과물을 전달했고 피고가 같은 날 서면으로 검수를 승인했습니다. 피고는 4,000,000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6,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는 가정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이 예시에서 청구하지 않습니다. 실제 권리관계는 계약 유형·해지·하자·검수·상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 본문 예시

제목 소장 (용역대금)

원고 김가람 (가상 인물)

피고 이다온 (가상 인물)

관할법원 피고 주소·계약상 관할합의 및 소가 등을 확인한 법원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법원이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2026년 2월 1일 결과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10,000,000원, 잔금 지급기일을 검수·승인 후 2026년 5월 15일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2026년 4월 30일 완성된 결과물을 전달했고 피고가 같은 날 서면으로 검수를 승인했습니다. 피고는 4,000,000원을 지급했고, 지급기일이 지난 나머지 6,000,000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미지급 대금 6,000,000원의 지급을 구합니다.

증거·별지 예시

- 계약서와 대금·검수·잔금 지급기일이 적힌 합의서 또는 발주서.
- 결과물 완성·전달 내역, 검수 요청·서면 승인 기록, 업무 범위 변경 합의.
- 세금계산서·청구서, 입금내역, 독촉·답변 기록. 세금계산서만으로 계약과 이행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전 확인

- 실제 피고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계약 명의와 사업자·법인 자료로 구분합니다. 일부 지급액과 상계·하자 주장을 반영하여 잔액을 재계산합니다.
- 지연손해금, 가집행, 소송비용 문구 및 관할은 실제 사건과 법원 안내에 맞춰 별도 검토합니다. 이 예시의 청구취지는 원금만 구합니다.
- 민사소송에서 입증되지 않은 결과물의 전달·검수를 완료된 사실로 단정하여 제출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민법 제664·665조 도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0조 ; 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대한민국 법원 양식모음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ProDocList.work

자료 확인: 2026-10-03. 사건별 소장 기재와 법원 전자소송 첨부 규격은 제출 당시 확인 필요.